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7일, 소병훈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소병훈의원)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하는데, 환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임.

개정안은 환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환수금의 환수실적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직역연금은 ‘연금관리기관이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서로 같으므로, 안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될 경우 ‘연금보험료 및 각종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3년)도 5년으로 연장할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 징수하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체계’가 도입·운영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각각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법제적 측면에서는,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안제115조제1항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지 아니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통일성

을 유지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안 제115조제1항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지 아니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